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조례 제정의 병행조치 제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자문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 1. 15인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뢰

- 자문위원회는 인권·헌법·교육·복지 전문가들과 교사단체의 교권 정책 담당자 15인에게 초안의 수정·보완 사항을 짚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초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검토 의견,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병행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의뢰하여 조례안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 2.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는 2010년 1월 19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일은 경기남부권 종합공청회, 24일은 학생 중심 공청회, 25일은 경기북부권 종합공청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학계·교사·보호자·학생 토론자들과 방청인들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 3. 학생참여기획단의 검토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꾸려진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도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로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 4.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매체,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초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른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부터 몇몇 조항에 대한 우려 입장,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까지를 두루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 ■ 조례에 대한 우려 의견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뒤 다양한 우려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우려들의 바탕에는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관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문위원

회는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런 우려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는 학생인권 관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그 갈등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관리자, 교사, 보호자, 학생 상호간의 갈등은 물론, 학생지도방식을 둘러싼 교사·학생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가 무엇을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자리잡힐 때, 학생들도 학교의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힐 때, 불필요한 학생통제에 쓰이는 교사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학생과 소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쓰일 때,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만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 지시, 타율과 획일성을 거둬낸 자리에 대화와 소통, 자율과 다양성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기둥인 교사-학생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동안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을 잘 보장해 왔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온 학교들은 외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뒷받침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적극 옹호하지만, 그 자율성이 학생의 인권과 교육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옹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미성숙하지 않다면 제정될 수 있고 미성숙하다면 제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권은 학생의 미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며, 연령과 성숙이 자동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누린 학생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이 참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의 활동과 논의 수준을 지켜보면서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입증되지 못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자문위원

회는 판단했습니다.

## ■ 초안의 주요 쟁점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전체 48개 조항 가운데 몇몇 조항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고, 그 결과 두 개의 조항은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되, 나머지 조항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항들을 향해 제기된 우려점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1. 체벌 금지(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교사 체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학생간폭력, 집단따돌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실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번 고심을 거듭해 보아도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수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육당국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도 체벌 대신에 상담이나 다른 교육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벌에 의존하여 확립되는 교권은 진정한 교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폭력이 없는 학교,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 2.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증가,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제·반강제하는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반교육적인 일들도 빚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때 일시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을 이유로 대면 '강제' 야자나 보충수업을 빠질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자나 보충수업을 강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남아 추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원 수강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무작정 강제로 잡아둔다고 사교육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 3. 두발·복장의 자유(12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두발·복장 등을 통해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은 두발·복장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탈선 방지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학생의 두발·복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특히 두발 길이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 요청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고 학교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두발·복장 제한을 없애고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청도 강력했습니다.
- 교복과 관련해서는 애초 원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신발 모양, 외투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학생·보호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4.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업분위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원안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현실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나 규제·압수 방식 등이 학교나 교사마다 달라 불거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보호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조례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 사상·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16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에게도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반성이 강요되는 일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적 지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적극 경청하면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반성문이라는 형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 강요'를 금지함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문을 손보았습니다. 학생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소통은 적극 독려되어야 하되,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을 강요하는 일은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또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문을 손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현실에 좀더 적합한 개념의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 7.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1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가운데 일환으로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위험하다거나 학내 질서 혼란, 학생의 정치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여는 것도 집회이고 학생회 임원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여는 것도 집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목적, 형태, 규모 등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도 특정 형태의 집회만을 떠올리며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위험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내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잘만 운영한다면 부러 집회까지 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자문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례 제정 전체를 발목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초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장의 조건 부과'가 외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집회의 자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한 만큼, 일반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권리 보장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8.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18조),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19조)에 이어 20조에서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한 권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맞는 성숙한 의견 개진과 책임의식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권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에서도, 세 차례의 공청회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성숙한 의견과 토론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참여의 기회를 계속 차단당해온 현실에서도 성숙한 의견과 태도를 스스로 길러왔습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 받는다면, 학생들의 성숙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 ■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

-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조화와 공청회, 자문위원회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조치들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인권 보장을 개별 학교나 교사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규정개정위원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럴 때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병행조치들은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일선 학교의 의무 이행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 1.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제시

### 1)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 학교 단위에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 조례에서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 중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인지 등이 모두 해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지침서 형태로 마련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안적 생활지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지원

- 학교 단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내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나 행동이 조례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 기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문제를 총괄 지원하고 학내 해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내 구제 절차는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권상담실이나 학생인권옹호관, 지역사회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교육청-일선학교-지역사회의 상보적 관계 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 합니다.

- 체벌을 대신할 상담체계 구축과 대안적 교육 지원 방식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학생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절차를 마련할 때, 조례안의 정신에 맞는 학생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제시

- 학생들이 책임있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학생자치 기구에게 보장해야 할 구체적 권한을 목록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취약한 인권상황에 놓여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들(학생선수,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시행되어야 합니다.

## 2. 학생인권과 조례에 관한 적극 홍보와 교육

### 1) 모범 사례 발굴 소개

-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참고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 모델로 전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이나 정책연구학교 지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 체벌 없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 교사의 정당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 등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관리자·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 과정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학생생활지도,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연수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할 감독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례 내용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3) 학생인권 교육안 마련과 강사단 구축

- 학생인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제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 3.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될 때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모델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교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교육적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한을 정리하여 교사 연수에서 활용한다거나,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등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과 창의적 역량에 기초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